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통 보

제 목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징수 결정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청문 시작 10일전까지 사전통지를 하여 청문을 할 수 있고, 징수 결정이 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으로 결정한 1,571건(923,374,625원 중 606,149,044원 징수)을 관리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2개월 까지 미납하여 보장비용 징수가 지연되고 있는 102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현황(2017. 08. 현재)

<단위 : 건, 원>

자치구	사업 유형	보장비용 징수 현황					징수완료		징수 지연
		징수 결정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율	징수 완료	납부액	
계		1,571	923,374,625	606,149,044	317,225,581	65.6%	808	445,565,904	102
동구	기초 생활 보장	59	62,862,988	34,751,178	28,111,810	55.3%	48	31,871,348	4
서구		1,145	489,211,262	320,989,396	168,221,866	65.6%	493	216,283,166	61
남구		27	35,581,580	24,984,170	10,597,410	70.2%	17	18,516,280	3
북구		111	116,526,310	101,958,580	14,567,730	87.5%	106	94,575,860	2
광산구		229	219,192,485	123,465,720	95,726,765	56.3%	144	84,319,250	32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통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미납액 28,111,810원의 조속한 회수와 보장비용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을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통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미납액 168,221,866원의 조속한 회수와 보장비용 미

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을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통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미납액 10,597,410원의 조속한 회수와 보장비용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을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통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미납액 14,567,730원의 조속한 회수와 보장비용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을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통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미납액 95,726,765원의 조속한 회수와 보장비용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을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